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9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마약류 매매의 유인·권유행위 금지 등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59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나.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마약류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등).
- 나.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2호 등).
-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류 매매의 유인·권유행위 금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마약류 매매의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3조제2호 등), 제3조제12호 각 목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제12호).

또한,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3조제13호 신설), 제3조제12호 각 목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u>알선</u> 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2. ----- ----- ----- ----- -- <u>유인·권유·알선</u> ----- -----.

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

-----.

3. -----

-----유인 · -----
권유 · 알선-----
-----.

4. -----

-----유인 · 권유 · 알선-----
-----.

5. -----

-----유인 · -----
권유 · 알선-----.

6. -----

-----유인 · 권유 · 알선-----

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
위

11. (생 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 라. (생 략)

<신 설>

-----,

-----.

7. -----
-----유인·권유·알선-----

-----.

10.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유인·권유
-----·알선하는-----

11. (현행과 같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 라. (현행과 같음)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신 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④ (생략)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며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4. 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

1. -----

--유인·권유·알선-----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
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

3. 4. (생략)

⑥ (생략)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
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
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
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
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
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
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
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⑤ -----

-----.

1. (현행과 같음)

2. -----유인·권유·알선---

3.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유
인·권유·알선-----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

-----유인·권유·알선-----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 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 ----- -----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 ----- -----.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 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 ----- ----- ----- ----- <u>유인·권유·알선</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 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 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 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 ·매매의 <u>알선</u>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 ----- ----- ----- ----- <u>유인·권유·알선</u>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 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 거나 매매를 <u>알선</u> 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4. ----- ----- ----- ----- <u>유인·권유·알선</u> ----- -----

소유 또는 사용한 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 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6. ----- ----- ----- ----- <u>유인·권유</u> <u>·알선</u> ----- -----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u>알선</u> 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7. ----- ----- <u>유인·권유</u> <u>·알선</u> ----- -----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u>알선</u> ,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 ----- ----- ----- <u>유인·</u> <u>권유·알선</u>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제61조(벌칙) ① ----- -----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나. (생략)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 12. (생략)

②·③ (생략)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유인·권유·알선---

5. -----

-----유인·권유·알선-----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

②・③ (생략)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략) <u><신설></u> ② <u>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증한다.</u>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u> ② <u>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 -----. 1. <u>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u> 2. <u>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마약류 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범죄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관련 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바, 마약류 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유인·권유하지 못하게 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확산세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제2호 등: 마약류 매매의 유인·권유 금지) 현행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각 마약류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만을 금지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마약류 매매의 유인·권유”도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단서 생략)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단서 생략)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단서 생략)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단서 생략)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단서 생략)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대마를 알선하는 행위. (단서 생략)

□ 실제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유인이나 권유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기나 성매매 등과 관련한 유사입법례²⁾에서도 알선·유인·권유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금지행위에 마약류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제12호: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유통 금지) 현행법 제3조제12호는 각 목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³⁾에서 정하는 방법인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광고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면 모두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 등의 내용을 신문·방송·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광고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폭넓게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할 경우, 문구상 공익적인 목적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인지 알리고 교육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제2항제2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의 유인·권유 금지) 개정안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 투약 등의 범죄는 타인의 유인이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미성년자 투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함께 마련하며,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안 제3조제14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행위 정보유통 금지) 개정안은 제3조제12호 각 목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⁴⁾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마약류 범죄가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제3조제14호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3조제12호에서는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14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3조제12호와 별도로 제14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제3조제14호의 금지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유통행위)는 안 제3조제12호(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고, 별도 처벌규정도 없어 개정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⁵⁾」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24.11.26.)되었고,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24.12.26.)됨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함.
- (법무부) 마약류 확산과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 인지는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제3조제14호의 금지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유통행위)는 안 제3조제12호(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고, 별도 처벌규정도 없어 개정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바 보완 검토가 필요함.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17호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문 의 처
02)6788-5504